

2023년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연 수 구
감 사 실

2023년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종합감사 결과 보고

I 감사개요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자체감사의 종류)
-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체감사규칙」 제5조(감사의 종류 및 실시 주기)
- 2023년 자체감사 및 감찰 계획 [감사실-60(2023.1.3.)]

☐ 감사기간 : 2023. 2. 13.(월) ~ 2. 24.(금) [10일간]

☐ 감사범위 : 2020. 8. 1. ~ 2022. 12. 31. 추진업무 전반

☐ 감사형태 : 실지감사(일반행정 감사 및 주민공개감사 병행 실시)

☐ 감 사 장 : 연수구 상설감사장

☐ 감사반원 : 1개반 5명

☐ 중점 감사사항

- 조직 및 인사·인력 운영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운영 여부
 - 기획예산과에서 실시하는 공단 조직진단과 연계
 - 조직진단 자료 등을 검토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 등 확인
- 재정운영 건전화 및 경영 개선사항

- 정책결정 및 예산 편성·집행의 적정성 여부
- 위탁시설 운영실태 적정성 여부
- 사업 추진 시 법령 및 내부규정 준수 여부 등

II

지적사항

제목	1.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위법 부당 내용	특정시간대 업무의 과중, 실적의 저조 등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의 성질, 업무량,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인력의 재배치, 근무시간 조정, 운영방식 조정 등의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 방법을 도모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함
처분 요구 사항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취업규정」에 따라 구청사 환경관리(오전근무) 및 견인보관소 위탁운영 업무의 효율적 인력 운영 방안 마련을 하도록 “권고” 조치함
제목	2.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위법 부당 내용	특수건강검진 재검진 대상자에게 재검진 일정 등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재검진 대상자 소속 팀의 사무업무 담당자 3명에게 명단을 메일로 송부하여 재검진 대상자의 민감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히 함
처분 요구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인사규정」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근거하여 “징계 요구” 조치함
제목	3.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운영에 관한 사항
위법 부당 내용	유연근무 직원에 대한 근무실태 점검 등을 실시하지 않고 운영계획에 제재 조치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신청 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유연근무 중인 직원에 대해 사용제한, 시간외근무 수당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
처분 요구 사항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취업규정」을 준수하여 유연근무 중인 직원의 복무점검 실시 및 유연근무제가 출퇴근시간 미준수, 시차출퇴근의 목적외사용 등으로 부당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개선 요구” 조치함
제목	4. 평가급 지급에 관한 사항
위법 부당 내용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인천광역시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보수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평가급 지급 운영내규」 등에 따라 평가급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도강사직 평가급을 운영내규에서 누락하고, 평가급 제외대상기간 산정오류로 오지급함

처분 요구 사항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인천광역시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보수규정」 관련 규정에 따라 공단의 평가급 지급 운영내규를 개정 하도록 “개선 요구” 조치하고, 평가급 과다 및 과소 지급 자에 대해 회수 및 추가지급 하도록 “시정 요구” 조치함
제목	5. 가족수당 및 복지포인트(다자녀포인트) 지급에 관한 사항
위법 부당 내용	「인천광역시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보수규정」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내규」에 따라 부양가족의 기본요건 충족 여부 및 변동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가족수당 및 복지포인트를 지급함
처분 요구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보수규정 시행내규」, 「인천광역시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내규」 및 「보수규정」에 따라 가족수당과 복지포인트 과소 및 과다 지급된 직원에 추가 지급 및 회수하도록 “시정 요구” 조치함
제목	6.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위법 부당 내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내규」에 따라 위원회로 하여금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수행예산에 대해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측 가능성이 결여되고 맞춤형 복지제도가 비계획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는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2021년 복지포인트 운영계획 미수립, 2020년과 2022년에는 복지포인트 추가배정에 대한 내부결재 문서 없이 관리부서 담당자가 예산 상황에 맞추어 임의로 조정률을 결정하고 임·직원에게 추가 복지포인트 배정하는 등 자의적으로 복지포인트를 운영함
처분 요구 사항	자의적이고 무분별한 복지포인트 추가 배정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 시 합리적으로 산출기초를 수립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도록 “주의(기관경고) 요구” 조치함
제목	7.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위법 부당 내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인사규정」상 공적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내규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원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계약심의위원회 운영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위원이 아닌 연수구 안전관리공단 내부직원으로 구성하였으며, 고객추진단 활동수당 지급 시 규정을 따르지 않고 지급함
처분 요구 사항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회 운영 등 각종 업무관련 규정 또는 내규를 준수하도록 ‘주의 요구’ 조치, 공적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시정 요구” 조치, 컨설팅 위원의 수당 지급 건 중 증빙되지 않은 추가 지급 건에 대해 회수하도록 “시정 요구” 조치함

제목	8. 직인관리에 관한 사항
위법 부당 내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직인관리규정」에 직인 명이 있으나 실제 직인 및 대장, 인영부가 존재하지 않거나 규정에 제시된 직인 명 외의 직인이 직인대장 및 인영부에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거나 직인대장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인영부에 누락되는 등 직인 관리에 소홀히 함
처분 요구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직인관리규정」에 따라 직인대장 및 인영부를 재정비 하고 직제개편에 의해 폐지된 조직 관련 직인의 폐기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시정 요구” 조치함
제목	9. 기록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위법 부당 내용	「2020년 공단 기록물관리 기본계획」을 따르지 않고 기록물평가심의회를 1년 이상 지연하여 구성·운영하였으며,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각종 재난 등으로부터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기록물 보안 및 재난대책’ 수립을 지연하는 등 공공기록물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
처분 요구 사항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운영내규」 등을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요구” 조치함
제목	10. 예산 과다편성에 관한 사항
위법 부당 내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피복지급 등에 관한 운영내규」를 근거로 업무성격상 제복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일반직(사무직) 직원들에게까지 피복비 예산을 편성하여 확대 지급함으로써 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지출함
처분 요구 사항	2023년 본예산에 편성된 피복비 예산 중 업무성격상 피복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일반직 근로자에 대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삭감하도록 “시정 요구” 조치, 피복이 실제로 필요한 직원들에게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피복지급 등에 관한 운영내규」를 일부 개정하도록 “개선 요구” 조치,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요구” 조치함
제목	11. 공사 하자검사에 관한 사항
위법 부당 내용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하나 실시하지 않았고, 하자보수 관리대장(수정 가능한 형태)으로만 관리하고 별도 전결권자(팀장)에 결재를 받지 않아 공사 하자관리를 소홀히 함
처분 요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사무위임전결 시행내규」 등을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사항	“주의 요구” 조치하고, 하자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전결규정에 따라 팀장 결재(전자 결재)를 받아 하자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의 요구” 조치함
제목	12. 공사 사회보험(산재, 고용) 보험료 적용에 관한 사항
위법 부당 내용	일부 공사 건에 대해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계상하지 않아 공사 발주 시 원가 계산에 소홀히 함
처분 요구 사항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국토교통부 고시)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등을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요구” 조치함
제목	13.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업주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위법 부당 내용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관리비용을 계상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관리에 소홀히 함
처분 요구 사항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요구” 조치,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및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시정 요구” 조치함
제목	14. 세출예산 집행품의에 관한 사항
위법 부당 내용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인건비, 여비 및 일상경비 교부의 경우(예산집행 품의 생략 가능) 외에 세출 예산 집행 시 사전에 품의를 하지 않고 지출함
처분 요구 사항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회계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요구” 조치함
제목	15.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위법 부당 내용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품의)을 한 후 신용카드 사용으로 지출을 결정(원인행위), 대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지급을 결정 및 지급(지출)하여야 하나, 오찬간담회비 지출 시 참석인원을 기재하지 않고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로 1인당 1회당 3만원 초과 집행함

처분 요구 사항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범위를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을 회수하도록 “시정 요구” 조치, 미공개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권고” 조치함
제목	16. 관서업무비 집행에 관한 사항
위법 부당 내용	종무식 참석 직원들을 위한 다과를 정원가산업무비로 구입하고 정년퇴직자 꽃다발, 노인복지관장 채용을 위한 면접용 다과를 부서업무비로 구입하여 예산과목의 성격 및 목적에 맞지 않게 예산을 집행함
처분 요구 사항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집행범위를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을 회수하도록 “시정 요구” 조치함
제목	17. 출장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위법 부당 내용	출장시간이 짧아 왕복 2km 이내에 근거리 출장으로 추정되거나 출장지가 명확하지 않아 출장지까지의 거리를 확인하기 어려운 출장내역에 대해 출장여비를 정액으로 부당하게 지급함
처분 요구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여비규정」 및 「공무원 여비 규정」 등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라며, 집행범위를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을 회수하도록 “시정 요구” 조치함
제목	18. 견인보관소 장기 미반환 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위법 부당 내용	「인천광역시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견인보관소 관리 운영지침」 상 견인보관소 장기 미 반환 차량에 대해 인수통지 등에도 불구하고 이사 불명,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 후 매각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인수통지 및 자진인수통지 누락, 자진인수통지 지연, 장기 미 반환차량 강제처리 요청을 지연한 경우 등 운영지침에 따른 절차를 적시에 이행하지 않음
처분 요구 사항	「도로교통법」,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견인보관소 관리 운영지침」 등을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요구” 조치함
제목	19.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미납 관리에 관한 사항
위법 부당 내용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해 분기별로 1차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고 수개월이 경과한 후 납부안내 고지를 하였으며 2차 고지안내 및 압류 고지 후 72건에 대해 실질적인 압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

처분 요구 사항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지침」 등을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히 기하도록 “주의 요구” 조치, 2차 고지(압류고지 포함) 후 실질적인 압류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72건에 대해 압류절차를 이행하도록 “시정 요구” 조치함
-------------------------	---